

瑞山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1999. 2. 19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1999. 2. 19
- 라. 上程日字 : 1998. 2. 26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會計課長 韓基宅)

가. 提案理由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건설에 필요한 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등 공유재산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면적을 정하는등 지방자치 단체의 공유재산관리등에 관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시가 분양 받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
- 시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 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 기타 시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조례안 제19조의 3

○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을 10년 이내 연 5%이자, 10년 이내 연 8%이자, 5년 이내 연 8%이자, 20년 이내 연 4%이자등 분할납부 대상을 구분 하여 규정함(조례안 제22조).

○ 연간대부료 및 사용요율은

-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지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 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함.

⇒ 조례안 제23조 제8항, 제9항

- 영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을
 - 전액감면, 75%감면, 50%감면등으로 구분규정함.
 - ⇒ 조례안 제23조의 2
- 농지는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경지를 5년이상 계속대부 받아 경작한 경우 당해 경작인에게 10,000㎡이하까지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고(조례안 제38조 제1항, 제2항)
 - 폐천부지는 국가로부터 양여받기 이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계속하여 대부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에게 동지역은 3,300㎡이하, 읍면지역은 6,600㎡이하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조례안 제38조 제3항).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본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제정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이번에 신설하는 조례안 제19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벤처기업에게 시유재산중 대부·매각등 공급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얼마나 되는지와
 - 이에 따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없었음.

5. 討 論 : 없었음.

6. 少數意見 : 없었음.

7.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제안번호	제 13 호
의결년월일	1999. (제 회)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9. 2. 18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
----------	----

제출일자 : 1999. 2. /

제 출 자 : 서산시장

1. 개 정 이 유

-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의 목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면적등을 조례로 정하는등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등에 관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 매각대금 분할납부등을 10년이내 연5%이자, 10년이내 연 8%이자, 5년이내 연 8%이자, 20년이내 연4%이자등 분할납부 대상을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22조).
-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10 이상으로 하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지 등의 지정을 받은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1천분의 10이상으로 함(안 제23조제8항 및제9항).
-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을 전액 감면, 75%감면, 50%감면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23조의2).

- 연체요율을 15%로 하되, 제22조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감면할 수 있는 조항과 시장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음(안 제28조).
- 수의계약 매각범위등을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영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동지역은 3,300㎡, 읍·면 지역은 6,600㎡이하 까지 매각하는 때, 영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3. 참고 사항

-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 제100조제1항, 제95조제2항제8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 제2호, 제25호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 제7조, 제8조, 제38조의4제2항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 도시재개발법 제4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
-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 지방세법제197조
- 농지세법제30조
- 하천법제25조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서는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시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안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기타 시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38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④영 제10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5.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23조제2항중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하며, 같은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⑥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이 있는 재산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⑧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⑨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투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임대료·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고시 고도기술 수반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안으로 이전 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효과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효과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19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안 또는 아파트형공장안의 공유재산

제25조제4항중 “인근의 매매 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으로 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text{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times \frac{\text{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text{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대부료등의 납기)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 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금)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 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36조제4항중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를 “공유임야관리전담 부서”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수의계약 매각범위등) ①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③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 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 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안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3(매각대금의 감면)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 및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안의 재산
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안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투자지역안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안의 재산

②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시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 장려지역안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
안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장용지안의 재산
- 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
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사업장안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장안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공장용지안의
재산
 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
사업안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안의 재산
- ⑤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
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
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안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안
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투자사업안의 재산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안의
재산

제49조중 “국장·담당관·과장등”을 “시설관리사등”으로 한다.

제50조제3호중 “1급 내지 2급이외의 관사”를 “시설관리사·기타관사등”으로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8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의

명

제20조(연구시설물의 설치금지) 대부분의 잠종 재산상에 연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 채납 또는 자진철회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상에 명백히 규정하여 재산의 회수 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8조의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3. 영 제95조 제2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천재·지변·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6.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발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제27조의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개

정

안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기타 시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삭 제>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잠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발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종 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업 명	개 정 안
<p>용지및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38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p>③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 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p>④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시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5.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p>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생략)</p> <p>② 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p>	<p>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현행과 같음)</p> <p>토지</p>

인 행	개 정 안
<p>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p>	<p>시가표준액</p>
<p>③ ~ ⑤ (생략)</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⑥주거용 건물이 있는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천분의 25로 한다.</p>	<p>⑥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 한다)이 있는 재산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p>
<p>⑦제1항내지 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이상으로 정수할 수 있다.</p>	<p><삭 제></p>
<p><신 설></p>	<p>⑧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p>
<p><신 설></p>	<p>⑨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23조의2(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투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임대료·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외·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써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p>

연	행	개	정	안
				<p>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p> <p>마.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p> <p>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사업</p> <p>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p> <p>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나. 고용창출효과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p> <p>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사업</p> <p>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p> <p>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나. 고용창출효과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업 명	개 정 안
	<p>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p> <p>라. 수출 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사업</p> <p>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p> <p>사. 제19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안 또는 아파트형공장안의 공유재산</p>
<p>제25조(토석채취료 등) ①~③ (생략)</p> <p>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사정정동단체,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⑤(생략)</p>	<p>제25조(토석채취료 등)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 ----- -----</p> <p>⑤(현행과 같음)</p>
<p>제2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건물의 부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체이 명백한 토지를 말함. 다만,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지면적이 광활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 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건물 부지로 본다)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제2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2~3 (생략)</p> <p><신 설></p>	<p>2~3 (현행과 같음)</p> <p>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p>

명	개 정 안
<p>제27조(대부료의 납기) ①시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 연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년도의 대부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p> <p>1.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p> <p>2.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로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p> <p>② 계약종료의 연도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p>	<p>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p> $\frac{\text{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text{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times \text{대부를 받은자가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p>제27조(대부료등의 납기)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p> <p>③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p> <p>④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p>
<p>제29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로 한다.</p>	<p>제29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p> <p>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p> <p>③시장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p>

현 영	개 정 안
<p>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생략)</p> <p>④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기간 감면할 수 있다.</p> <p>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현행과 같음)</p> <p>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와</p>
<p>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제38조(수의계약 매각범위등) ①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p>
<p>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동지역에서는 300㎡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700㎡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p>
<p>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공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p>	<p>③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유허가를 받은자가 양여 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p>
<p>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000㎡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 4.30이전부터 시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시소유이외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 할 수 있다.</p>	<p>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p> <p>2.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p> <p>3. 폐천부지 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 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p>

연	행	개	정	안
<p data-bbox="120 1545 246 1580"><신 설></p>				<p data-bbox="724 272 1304 386">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data-bbox="724 396 1304 1516"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724 396 1304 627">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li data-bbox="724 637 1304 908">2.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 한다. <li data-bbox="724 917 1304 1516">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안에서 매각할 수 있다.
	<p data-bbox="724 1541 1304 1777">제38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 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p>			

업 명	개 정 안
	<p>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과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안의 재산</p> <p>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안의 재산</p> <p>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 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안의 재산</p> <p>4.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조성 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안 의 재산</p> <p>② 지방산업 단지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 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p>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 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시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 하는 투자 장려지역안의 재산</p> <p>2.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30억 달러 이상인 대형공장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p> <p>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 천명 이상인 공장용지안의 재산</p> <p>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 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외·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사업 부문으로써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사업장안 의 재산</p> <p>2. 벤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 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장안의 재산</p> <p>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공장용지안의</p>

업 명	개 정 안
--------	-------------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 부시장 국장·담당관·과장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 전세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 2. (생략)

3. 3급관사 : 1급 내지 2급 이외의 관사

제56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관사를 사용한 자는 매월 봉급지급일 다음날까지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100분의 6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사입주 첫달과 마지막달의 사용료 일수계산은 사용한 날을 기준한다.

재산

4. 수출 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안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 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안의 재산

⑤영 제96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안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안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공장용지안의 재산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안의 재산

제49조(정의) -----
----- 시설관리사등 -----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 2. (현행과 같음)

----- 시설관리사·기타관사등 -----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

현 행	개 정 안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p> <p>1. 사용대상공무원이 직접 사용 하는 경우</p> <p>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p>	<p>원이 사용하는 경우</p>